

13. 公共資金管理基金法中 改正法律(案) 立法豫告

재정경제원공고제 1997-83호 1997. 9. 1

개정이유

공공자금관리기금이 채권인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던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가스공사 등이 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”的 개정 및 “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특별법”的 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, 앞으로는 동기금이 이들 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할 수 없게 되었는 바, 법을 개정하여 동기금이 인수할 수 있는 국·공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계속 인수토록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인수할 수 있는
국·공채의 범위를 국채·지방채 및 “특
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
근거하여 발행한 채권”으로 확대함.

나.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 에
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통합되어 폐
지됨에 따라 동기금을 의무예약기금에서
제외함.

주택회보